

<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특별호: 2026년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 시리즈 ④ >

##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이제는 법과 제도로 규율해야”

○ 민주연구원은 2026년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입법 과제로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법 개정 - 이론적 근거와 규제 공백의 실태, 그리고 단계적 입법 방안」 정책브리핑을 발표했다.

- 이번 브리핑은 혐오와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규율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혐오표현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거나 역사부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고위공직자 혐오발언을 일반 시민의 발언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와 현행법의 규제 공백을 짚고 단계적 입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 브리핑을 작성한 류이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정책학 박사)은 “고위공직자의 발언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헌법적 지위와 행정력·공권력 집행이 결합돼 있어, 그 자체로 사회적 서열과 폭력의 조건을 즉각 구성하고 특정 대상을 실존적 안보 위협으로 격상시키는 트리거로 작동한다”고 밝혔다.
- 브리핑은 안보화 이론(Securitization), 정부표현 법리(Government Speech Doctrine), 화행이론(Speech Act Theory) 등 세 가지 이론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민의 46.6%가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과거보다 증가했다고 응답했

고 정치인 등 유명인의 혐오표현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응답 역시 2019년 49.4%에서 2021년 76.3%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 브리핑은 현행법상 혐오표현 규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통합적 정의가 부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됐음에도 구체적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 학문·연구 목적이라는 외피를 쓰고 역사부정행위를 자행한 사례(ex. 이진숙 의원의 ‘5.18 재조명’ 포럼) 등을 짚으며,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자체가 피해집단의 반박을 무력화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를 토대로 브리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혐오표현 정의 조항 신설 ▲관련 개별법(국회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 개정을 통한 준용 등 2단계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공론화 단계에서 ‘적용대상을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로 한정’, ‘국제인권규범을 원용한 혐오표현 정의의 명확화’ 등을, 입법 단계에서 ‘소관 상임위 지정 및 계류 법안 병합 심사’, ‘시민사회-국회 상설 협의체 구성’ 등 6가지 실행 과제를 제언했다.
- 2025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혐오·조롱에 대한 강력 대응 의지를 밝히고, 인사혁신처도 고위공직자 혐오발언에 대한 당연퇴직·징계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브리핑이 제시한 입법 로드맵이 더욱 주목된다.

[붙임] 고위공직자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법 개정 정책브리핑 1부.